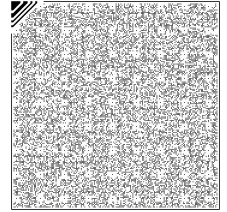




고용노동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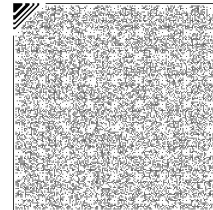


수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

1. 고용노동행정의 발전을 위한 귀 사업장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.8.28.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또한,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됩니다.
 -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, 우편,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total.kconwel.or.kr), 국민연금 EDI(edi.nps.or.kr), 건강보험EDI(edi.nhis.or.kr)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이직확인서, 피보험자격 신청서 동시 제출은 팩스, 우편, 방문 제출 불가>
3. 한편,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- 특히,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(☎1350) 또는 근로복지공단콜센터(☎1588-0075) 끝.



고용노동부장관



주무관

박주윤

행정사무관

임경희

고용지원실업 전결 2020. 8. 21.

급여과장

서명석

협조자

시행 고용지원실업급여과-9316 (2020. 8. 21.)

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여진동 581 고용노동부) 11 / www.moel.go.kr
동 403호

전화번호 044-202-7378 팩스번호 044-202-8039 / invisible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